

『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2월 1일

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박 세 범

나. 제안이유

2017년 상반기 개관예정인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위치와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무의 관리 및 집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위치, 명칭, 운영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(안 제2조, 제2조의2, 제2조의3)
-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무의 관리 및 집행 주체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장에서 구미시장으로 변경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총무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검토결과

본 조례안은

- 2017년 상반기 개관예정인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위치와 명칭 및 운영 사항과,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무의 관리 및 집행 주체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장에서 구미시장으로 변경하여,
- 사무의 관리와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